자동차산업분야 마이스터고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우편번호) 41171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8(효목1동 212번지) 본교홈페이지: http://www.dgmeister.hs.kr

입시홈페이지: dgmeister.myapply.kr

교무실: O53-231-8811 FAX) O53-958-35O2 행정실: O53-231-8797 FAX) O53-958-35O1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1=

모집정원(남녀공학) 및 전공학과

1. 모집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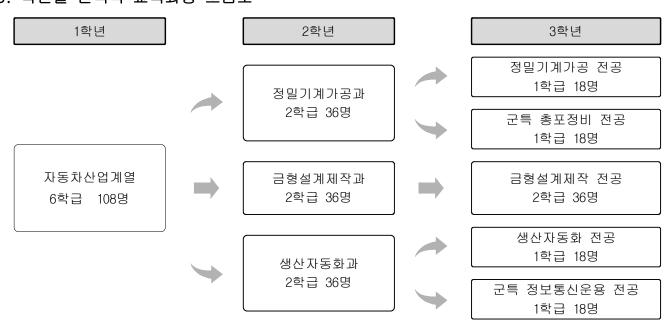
자동차 신	업 계열 108명
일반전형	65명 (60%)
특별전형	43명 (40%)

- 자동차산업계열로 모집하고, 2학년 진급 시 본인의 희망과 적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공 선발 기준에 따라 전공학과 배정
- 모집지역은 전국이며, 대구광역시 모집군 대상 자는 모집정원의 50%에서 우선 선발

2. 전공학과

전공학과	정밀기계가공과	금형설계제작과	생산자동화과	계
학 급 수	2학급	2학급	2학급	6학급
학 과 정 원	36명	36명	36명	108명
군 특성화 과정 (3학년 선택과정)	총포정비 (18명)		정보통신운용 (18명)	36명

3. 학년별 선택적 교육과정 흐름도



2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 교부 및 접수	2024.10.14(월) ~ 10.17.(목) 17:00까지	■ 인터넷 접수(학교홈페이지 팝업게시) 후 제출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마감 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10.23.(수) 10:00	■ 원서접수 사이트 및 지원 학교별로 통보 ■ 전형별 1.5배수 선발 (일반전형:97명, 특별전형:65명)
2차 전형 (심층면접, 신체검사)	2024.10.25.(금) 13:00	■ 전형 장소: 본교 입학전형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4.10.30.(수) 10:00	■ 원서접수 사이트 및 지원 학교별로 통보

[※] 최종합격자(입학예정자)는 전원 기숙사 입소 의무를 갖고, 기숙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원 자격

■ 공업 기술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고 본교 졸업 후 전공분야에 취업할 의지가 명확한 자

1. 일반전형 지원 자격

- 가.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2.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일반전형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사회통합자전형의 합격자 수는 전체 정원의 10%를 확보한다.)
- 소속중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 군특성화전형 대상자

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전 구		대 상
기 회 균 등 전	법 정 대 상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 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020	인 정 대 상 자	 차차상위계층 교육청에서 정한 교육비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학교장이 추천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사 다 2 전	냥성	**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덧붙임〉 참조

나. 소속중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 1) 자동차산업분야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 소속 학교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 중소기업(제조업 분야로 사업자 등록) 경영자의 자녀 중 가업승계 예정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군특성화전형 대상자

■ 군특성화 과정 지원 희망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1) 육군의 초급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교당 추천인원 제한없음)
- 2) 졸업과 동시에 육군 전문기술병으로 입대하여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 근무가 가능한 남학생

■ 군특성화 과정 지원 희망자 유의사항

- 1) 군특성화 전형 합격자는 입학 후 군특성화 대상자로 우선 배정한다.
- 2) 군특성화전형 지원기준은 부사관 임관에 적합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남자로 다음과 같음. (신체검사 제출서류의 기준, [서식 2] 참조)

구분 신장 체중		ᆌᄌ	DMI	시력(나안,교정)		청력	혈압	기타
十正	신경	좌 우	우	6 F	28	기다		
기준	159~ 195cm	42~120kg 미만	17~ 33미만	교정 0.7이상 - 교정시력 0 - 색신검사(4 이상자 제요	백약,색맹검사)	-1,000Hz, 30dB	139/89 ~100/70	※자해, 문신으로 인한반흔자 제외※수술 후 흔적이 없는 자지원 가능

※ 신체 등급 3급 이상자 및 신장·체중·신체(BMI) 등위 2급 이상자(아래 등위표 참조)

등급 신장(cm)	1급	1급 2급		4급	
159미만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이상 161미만	-	-	17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61이상 196미만	20이상~25미만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17미만, 33이상	
196이상 -		-	-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 BMI 계산법: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예; 키가 163cm이고, 몸무게 60kg인 사람의 체질량지수는 60÷(1.63×1.63)=22.6 임)
- 3) 군특성화전형 지원자는 입학 후 2학년 2학기에 육군본부 주관하에 신체검사, 신원조회 (범죄사실 여부)를 거쳐야 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본인이 검토하여야 하며 입학 후 결격사유 발생 시 군 특성화 입대 대상자에서 제외됨.
- 4) 군 특성화 과정은 국가 시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특례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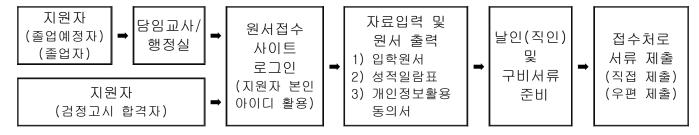
- 가. (대상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학교별 모집정원 내에서 선발
 - ▶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학교별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하되, 기회균등전형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전체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4 지원방법 및 원서 작성 요령

- 1. 본교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지원자의 인적사항과 성적을 입력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서 보훈번호를 확인한 후 보 훈 번호를 입력
- 2. 본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학원서」,「성적일람표」,「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출력하여 지원자, 보호자, 담임 및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u>2024. 10. 17.(목) 17:00까지</u>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본교 신입생 원서접수처로 제출
- 3. 지원 절차



- ※ 원서접수 사이트 : **본교 홈페이지 팝업 게시**
-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8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원서 접수처
- ※ 서류 제출은 접수 마감일(2024.10.17.(목)) 17: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 우편으로 입학원서와 구비서류 제출 시 접수 마감 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함

5 전형방법

1. 1차 전형

구분	디지이의(명)	1차건	ш¬		
	모집인원(명)	일반전형	특별전형	합계	비고
자동차산업계열	108	97	65	162	

- 가. 선발인원: 전형별 1.5배수 인원 선발
- 나. 모집요강에서 제시하는 성적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선발
- 다. 특별전형 합격자를 먼저 선발한 후 탈락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하여 일반전형 합격자를 선발(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전형 성적산출 방법 적용)
- 라. 1차 전형 선발 최하위 성적에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2. 2차 전형

- 가. 응시 자격: 1차 전형 합격자
- 나. 2차 전형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2차 전형 점수는 0점으로 처리
- 다.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 의거하여 2차 전형 실시
 - 1)(응시 불가 확인시) 병원(의사)의 진단에 따라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해 단계별 전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 처리하여 전형함.
 - 2차 전형 전체 미응시 : 1차 전형 점수에서 환산 처리
 - 2차 전형 일부 미응시 : 실시한 2차 전형 점수에서 환산 처리

3. 최종합격자 선발 기준

- 가. 대구광역시 모집군 대상자는 모집정원의 50% 범위에서 우선 선발
 - ※ 대구광역시 모집군
 - 1)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각종 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졸업예정자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 위 2), 3)항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 자의 자녀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대구혁신도시 이전 예정 기관(12개 기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산업 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 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앙119구조본부

- 나. 특별전형 합격자의 선발
 - 지원자의 2차전형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특별전형으로 미충원된 인원은 일반전형 모집정원에 포함하여 선발
-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하여 선발
- 다. 일반전형 합격자의 선발
 - 지원자의 2차전형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
- 라. 모든 전형의 동점자는 교과성적, 심층면접, 봉사활동, 가산점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함
- 마.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름

6 성적산출

1. 전형별 성적 점수 및 반영비율

		1차	전형				2차	전형		
구	구 분				계 교과 봉		봉사 가산점			계
, (교과성적	출 결	3	성적	활동	리더십	모범상 수상	심층면접	
이바저청	졸업예정자 졸업생	60 (60%)	40 (40%)	100점	15 (15%)	9 (9%)	3 (3%)	3 (3%)	70 (70%)	100점
일반전형-	검정고시	100 (100%)	•	(100%)	30 (30%)	•	•	•	70 (70%)	(100%)
트벼저청	졸업예정자 졸업생	50 (50%)	50 (50%)	100점	15 (15%)	9 (9%)	3 (3%)	3 (3%)	70 (70%)	100점
특별전형·	검정고시	100 (50%)	•	(100%)	30 (30%)	•	•	•	70 (70%)	(100%)
계 100 (100%)				100 (100%)						

- 가. 교과성적을 제외한 출결, 봉사활동, 가산점의 적용 기준일은 2024.09.30.(단,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내용으로 하며, 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단, 가산점의 임명장은 학교생활기록부 미등재 시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원본대조필'이 되어 있어야 함)
- 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과목별 취득한 점수를 성취도 환산점으로 산출하여 과목별로 반영한다.

2. 교과성적

- 가. 교과성적 반영비율 :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의 비율로 반영 단, 자유학기제 시행학교는 별도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나. 졸업예정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교과성적 반영(체육·음악·미술 포함) 졸업생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모든 교과성적 반영

(단, 성취도에 'P'로 기록된 교과는 교과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다. 전 교과 성취도를 환산(A=5, B=4, C=3, D=2, E=1)하여, 환산점의 총합을 과목수로 나누어 반영 (단, 체육·음악·미술교과 등 성취도가 3등급(A, B, C) 평가로 나오는 경우, A(우수)는 5점, B(보통)는 4점, C(미흡)는 3점을 적용)
- 라. 자유학기제 등으로 교과 성적이 없는 학기가 있는 경우, 성적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동일 학년 성적이 있는 학기의 성적을 100% 반영
 - 예시) 2학년 1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2학기 성적을 100% 반영
- 마. 1개 학년의 성적이 없는 경우, 성적이 있는 학년의 반영비율을 100%로 하여 산출

바. 교과성적 산출방법

1) 일반전형

구분	산출 공식	점수
졸업예정자	$\left(1.2\times\frac{A_{11}}{N_{11}}+1.2\times\frac{A_{12}}{N_{12}}+1.8\times\frac{A_{21}}{N_{21}}+1.8\times\frac{A_{22}}{N_{22}}+6\times\frac{A_{31}}{N_{31}}\right)$	
(1차전형)	$\left(\frac{1.2 \times N_{11}}{N_{11}} + 1.2 \times N_{12} + 1.8 \times N_{21} + 1.8 \times N_{22} + 0 \times N_{31}}{N_{31}}\right)$	60점
졸업생	$\left \left(1.2 \times \frac{A_{11}}{N_{11}} + 1.2 \times \frac{A_{12}}{N_{12}} + 1.8 \times \frac{A_{21}}{N_{21}} + 1.8 \times \frac{A_{22}}{N_{22}} + 3 \times \frac{A_{31}}{N_{31}} + 3 \times \frac{A_{32}}{N_{32}} \right) \right $	00 🗖
(1차전형)	$\left(\frac{1.2}{N_{11}} + 1.2}{N_{12}} + \frac{1.3}{N_{12}} + 1.3}{N_{21}} + 1.3} \times \frac{1.3}{N_{22}} + \frac{1.3}{N_{31}} + \frac{1.3}{N_{32}} + \frac{1.3} + \frac{1.3}{N_{32}} + \frac{1.3}{N_{32}} + \frac{1.3}{N_{32}} + \frac{1.3}{$	
졸업예정자	$0.25 \times \left(1.2 \times \frac{A_{11}}{N_{11}} + 1.2 \times \frac{A_{12}}{N_{12}} + 1.8 \times \frac{A_{21}}{N_{21}} + 1.8 \times \frac{A_{22}}{N_{22}} + 6 \times \frac{A_{31}}{N_{31}}\right)$	
(2차전형)	$ \begin{array}{c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15점
졸업생	$ \left 0.25 \times \left(1.2 \times \frac{A_{11}}{N_{11}} + 1.2 \times \frac{A_{12}}{N_{12}} + 1.8 \times \frac{A_{21}}{N_{21}} + 1.8 \times \frac{A_{22}}{N_{22}} + 3 \times \frac{A_{31}}{N_{31}} + 3 \times \frac{A_{32}}{N_{32}} \right) \right $	13-0
(2차전형)		
검정고시	$20 imes \left[\left(rac{A}{N} ight) \right]$	100점
(1차전형)	$20 \wedge [\langle N \rangle]$	100 🗖
검정고시	$6 \times \left[\left(\frac{A}{N} \right) \right]$	30점
(2차전형)	$0 \land [(\overline{N})]$	00 🗖

2) 특별전형

구분	산출 공식	점수
졸업예정자	$\left(1\times\frac{A_{11}}{N_{11}}+1\times\frac{A_{12}}{N_{12}}+1.5\times\frac{A_{21}}{N_{21}}+1.5\times\frac{A_{22}}{N_{22}}+5\times\frac{A_{31}}{N_{31}}\right)$	
(1차전형)	$\left(\frac{1}{N_{11}} + \frac{1}{N_{12}} + \frac{1}{N_{22}} + \frac{1}{N_{21}} + \frac{1}{N_{22}} + \frac{3}{N_{21}} + \frac{3}{N_{31}}\right)$	50점
졸업생	$\left(1\times\frac{A_{11}}{N_{11}}+1\times\frac{A_{12}}{N_{12}}+1.5\times\frac{A_{21}}{N_{21}}+1.5\times\frac{A_{22}}{N_{22}}+2.5\times\frac{A_{31}}{N_{31}}+2.5\times\frac{A_{32}}{N_{32}}\right)$	30 🗖
(1차전형)	$\left(\frac{1 \wedge \overline{N_{11}} + 1 \wedge \overline{N_{12}} + 1.3 \wedge \overline{N_{21}} + 1.3 \wedge \overline{N_{22}} + 2.3 \wedge \overline{N_{31}} + 2.3 \wedge \overline{N_{32}} \right)$	
졸업예정자	$0.3 \times \left(1 \times \frac{A_{11}}{N_{11}} + 1 \times \frac{A_{12}}{N_{12}} + 1.5 \times \frac{A_{21}}{N_{21}} + 1.5 \times \frac{A_{22}}{N_{22}} + 5 \times \frac{A_{31}}{N_{31}}\right)$	
(2차전형)	$ \frac{0.3 \wedge \left(\frac{1}{N_{11}} + \frac{1}{N_{12}} + \frac{1}{N_{21}} + \frac{1}{N_{21}} + \frac{1}{N_{22}} + \frac{3}{N_{21}} + \frac{3}{N_{21}} \right) }{N_{21}} $	15점
졸업생	$0.3 \times \left(1 \times \frac{A_{11}}{N_{11}} + 1 \times \frac{A_{12}}{N_{12}} + 1.5 \times \frac{A_{21}}{N_{21}} + 1.5 \times \frac{A_{22}}{N_{22}} + 2.5 \times \frac{A_{31}}{N_{31}} + 2.5 \times \frac{A_{32}}{N_{32}} + 2.5 \times \frac{A_{31}}{N_{32}} + 2.5 \times \frac{A_{32}}{N_{32}} + 2.5 \times \frac{A_{31}}{N_{32}} + 2.5 \times \frac{A_{32}}{N_{32}} + 2.5 \times A_{3$	13 🗖
(2차전형)	$0.3 \times (1 \times N_{11} + 1 \times N_{12} + 1.3 \times N_{21} + 1.3 \times N_{22} + 2.3 \times N_{31} + 2.3 \times N_{32})$	
검정고시	$20 imes \left[\left(rac{A}{N} ight) \right]$	100점
(1차전형)	$20 \wedge \left\lfloor \left(\frac{N}{N} \right) \right\rfloor$	100 🗖
검정고시	$6 \times \left[\left(\frac{A}{N} \right) \right]$	30점
(2차전형)	$0 \wedge [(\overline{N})]$	30°E

3) 산출공식의 적용

가) 졸업예정자

(1) A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5, B=4, C=3, D=2, E=1

(2) N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과목수

나) 졸업생

(1) A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A=5, B=4, C=3, D=2, E=1) (수, 우, 미, 양, 가로 표현되는 졸업생, 수=5, 우=4, 미=3. 양=2, 가=1)

(2) Nij : i학년 j학기에 이수한 과목수

다) 검정고시

(1) A : 취득한 개인의 과목별 성취도 환산점의 총합

검정고시	100점 이하	95점 미만	90점 미만	85점 미만	80점 미만
과목별 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환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2) N : 이수한 과목수

3. 출결

-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4.9.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 나. 출결 성적산출
 - 1) 1차 전형(일반전형) : [40 (미인정 결석일수)×6-(미인정 지각/결과/조퇴 횟수)×2]점
 - 2) 1차 전형(특별전형) : [50 (미인정 결석일수)×6-(미인정 지각/결과/조퇴 횟수)×2]점
 - 3) 출결 성적의 최저점은 0점
- 다. 미인정 결석일 수 및 미인정지각/결과/조퇴 횟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 1) 3개 학년 미인정 결석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
 - 2) 3개 학년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과, 미인정 조퇴의 횟수를 합산하여 산출
- 라.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로 인한 횟수는 포함하지 않음
- 마. 기타 출결상황 처리기준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련 477호』및『2024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준한다

4. 봉사활동

-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4.9.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봉사활동만을 인정함
- 다. 봉사활동 성적산출
 - 1) 졸업자
 - 가)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는 아래 기준표에 따른다.
 - 나) 2019학년도 이전: 20시간 이상(3점), 20시간 미만~15시간 이상(2점), 15시간 미만(1점)

2020학년도		2021 · 2022학년	토	2023학년도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이수 시간과 관계없이 만점(3점) 부여		5시간 이상	3점	10시간 이상	3점	
	3점	5시간 미만 3시간 이상	2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2점	
		3시간 미만	1점	7시간 미만	1점	

2) 2025년 2월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봉사활동 성적

2022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기준 시수	점수
5시간 이상	3점	10시간 이상	3점	10시간 이상	3점
5시간 미만 3시간 이상	2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2점	10시간 미만 7시간 이상	2점
3시간 미만	1점	7시간 미만	1점	7시간 미만	1점

5. 가산점

-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성적 반영 : 적용 기준일 (2024.9.30., 졸업생은 졸업일 기준)
-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된 사항만을 인정함
- 다. 리더십 가산점

- 1) 전교 학생회장, 전교 학생부회장, 학급 반장에 한함(학급 부반장 미포함)
- 2) 리더십 가산점 성적산출

구분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졸업예정자	0.5	0.5	0.5	0.5	0.5	0.5
졸업자	0.5	0.5	0.5	0.5	0.5	0.5

- ※ 졸업예정자 중 9월 30일 기준으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0.5점 인정
- 3) 동일 학기에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0.5점만 인정
- 4) 임원의 활동 기간이 해당 학기 전체일 경우에만 인정(중도 포기 및 변경 시 미인정)
- 라. 모범상 가산점
 - 1) 중학교 재학 중 교내에서 수상한 개인별 모범상(모범, 선행, 효행, 공로, 봉사 등)
 - 2) 건당 1점을 부여하되,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3) 모범상 수상경력은 한 학기당 한 건씩만 인정

6. 심층면접

소질, 적성, 인성 및 태도, 지원 전공 이해, 진학 동기, 향후 진로 계획 등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여 미래 마이스터로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

가. 심층면접 평가 내용 및 반영비율

평가 영역	평가 내용	반영 비율
직업기초능력평가(직무적성)	언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지각력	80%
개별면접(인성 및 성장가능성)	진로계획, 표현력, 인성 및 태도 등	20%

- 나. 직업기초능력평가: 선택형 문항으로 평가하며 중학교 교육과정과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직무 적성 평가
- 다. 면접
 - 1) 면접 영역의 요소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다면 평가를 실시하여 면접 점수를 부여
 - 2) 면접 영역 및 면접 요소별 배점, 척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입시전형일 전에 본교 입학전형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

7 신체검사

1. 신체검사는 점수로 환산하지 않는다.

(응시 불가 확인시) 병원(의사)의 진단에 따라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단계별 전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 2. 합격자 배제 조건
 - 가. 좌·우 교정시력이 모두 0.3 미만인 자(단, 군특성화 지원자는 0.7 미만인 자)
 - 나.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하여 실습에 지장이 있는 자
 - 다. 상·하지의 기능 장애로 실습 등에 지장이 있는 자
 - 라. 학업수행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뇌전증과 정신 질환이 있는 자
 - 마. 이상 소견 발생자는 본교 보건교사의 검사 소견에 따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8 기타 사항

1. 각종 특전

- 가. 3년간 학비 및 방과후교육비 면제
- 나. 전원 기숙사 생활 (기숙사비 무료)
- 다. 각종 장학금 지급 및 우수 학생 해외현장직업체험학습 실시
- 라. 글로벌현장학습을 통한 해외 취업 지원
- 마. 우수기업체 취업 지원
- 바. 선취업 후진학 가능

2. 유의 사항

- 가. 본교 지원자는 전국 소재 타 마이스터고에 이중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중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나. 본교 합격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2025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재응시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8항)
- 다. 본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특성화고 및 후기 고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라. 본교 입학 지원에 있어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학생 선발업무를 방해할 경우 입학이 허가된 경우라도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마. 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바. 전형자료에 미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 제출된 서류는 입학전형 업무 및 합격 후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 최종합격자는 전원 기숙사 입소 의무를 갖고 기숙사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차.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릅니다.
- 카.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 전형 기간 중 본인 또는 보호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교 교무실(053-231-8811)로 변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락 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하여야 함)

9 제출서류

구분		제	출서류	
공통사항	1.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입학원서) - 3개월 이내 증명사진 스캔 후 입학전형 홈페이지에 입력 - 단면 인쇄 (흑백 인쇄 가능) - 출력된 입학원서의 증명사진에 학교장 직인 날인 2. 개인별 성적 일람표 1부(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성적 입력 후 출력) 3.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1부(입학원서 출력시 인쇄됨) : 본인 날인 또는 서명 필요 4.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원본대조필) ※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는 해당 학교의 '원본대조필'을 받아서 제출			
	1. 사회통합 전	형 대상자	<덧붙임3> 증빙서류, [서식3] 학부모 확인서 * 기회 균등 중 가정 형편 곤란 대상자의 경우 [서식1] 학교장 추천서 제출	
	2. 소속학교장	가. 마이스터 성장 잠재력 대상자	[서식1] 학교장추천서	
일반전형	추천전형 대상자	나. 가업승계자	[서식1] 학교장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외 지원 대상자	3. 군특성화전형	령 대상자	[서식1] 학교장추천서 [서식2] 군특성화전형 지원자용 신체검사서	
404	4. 특례입학자	가. 해외 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덧붙임1>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5 그기터중대사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	< 덧붙임1>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5. 국가보훈대상 ※ 기타 지원 표	<u>사 및 그 사녀</u> ŀ격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서식3] 학부모확인서, <덧붙임3> 증빙서류 추가로 제축학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 회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	급한 서류이어야 함	
	1.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주민등록등본	
	2. 졸업자 및 동	등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주민등록등본	
기타사항	3.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 검정고시 합격	쿠자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증 전과목 성적증명서 사본	

최종	최종합격자는 입학 전까지 「기숙사 입사용 건강진단서」를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합격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제출일시: 추후 안내 예정)

	학교홈페이지 : <u>http://www.dgmeister.hs</u>	<u>s.kr</u>	
입학관련 문의처	문의전화 : 053) 231-8811, 8813, 8814	fax) 958-3502(교무실)	
E-1. 1	주소 : (41171)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 48(3	효목1동 212번지)	

덧붙임 1

해외 귀국학생 및 외국인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출 서류

해당자 구분	외국에서 9년이상	외국에서	과학기술자	외국인 (제2호		북한	
구비서류	(초중과정) 이수한 학생 (제1호)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및 교수요원 자녀 (제2호나목)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이탈 주민 (제3,4호)	비고
외국학교 全 학년 성적(재학)증명서	0	0	0	0	0		재학학년(기간) 명시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 관리)증명서		(())	(0)				최종 재학년월일 (최종 재학학년) 명시
출입국시실증명서	○ (학생)	○ (부,모학생)	○ (부,모학생)	O (학생)	○ (학생)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 사무소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0	0		순수외국인은 기족관계 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0	0	0			0	재외동포 자녀는 말소 된 주민등록등본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영주권(시민권)사본		(()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부,모,학생)					재외공관 발행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0				주무부처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0)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 발급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부,모,학생)	○ (학생)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 사무소 발급
새터민 등록확인서	(0)					0	해당 행정구청 발급
학력확인서	(0)					0	해당 행정구청 발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0)					0	해당 행정구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	(())					0	해당 교육청 발급

^{※ (○)}는 해당자에 한함

[※] 영문 및 한글 이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덧붙임 2

2025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소득 8분위 확인 기준표

□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구전구	그 국기 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고, <u>부·</u> 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 (예1) 조모, 부, 모, 신청 학생, 동생이 있을 경우 ⇒ 가구원수는 4명(조모 제외)
 - (예2) 외조모, 신청 학생, 동생인 경우 ⇒ 기구원수는 3명(부모가 없으므로 외조모 포함)

※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 O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지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는 제외)
- 부·모 중 한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합산하지 않음
- O (적용) 부·모가 각자의 건강보험에 별도의 부양자로서 가입된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
- 부·모가 모두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지역 기준 적용
- 부·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직장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혼합 기준 적용
- <u>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u> (외)조부·조모 등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 <u>부·모가 모두 피부양자로 조회된 경우</u>로서 부·모가 해당 학생의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피부양 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부양자인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적용

덧붙임 3

2025학년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증빙 서류

	C	· 내상자	제출 서류	발급처
		고투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공통	학부모 확인서	<덧붙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법정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기회 균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전형		교육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차차상위계층	교육비지원확인서	해당 학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한부모가족보호		한부모가족 증명서(또는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구청, 주민자치센터
	학교장이 추천한	 난 경제적 곤란자	학교장 추천서, 관련 증빙서류	
	7284 121		건강보험증 사본,	
		지역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3 ~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공통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3 ~ 6개월 평균 납부액)	(관할지사)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결과 통지서	관할 교육(지원)청
	북한이탈주민 5	돈는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청, 통일부
사회	다문화가정 자니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외국인등록증명서(부모)(해당자), 귀화증명서(해당자)	
기최 다양성	아동복지시설수	용자	아동복지시설 재원 증명서	
기증증 전형	소년소녀가장		추가 서류 없음	
	조손가정 자녀		추가 서류 없음	
	순직 공무원의	자녀	순직 확인서	
	장애인 가정 가		장애인 등록증(또는 증명서)	
	농어촌 지역(행 학교 졸업(예정)	정구역상 읍면지역) 소재 중 자	졸업증명서(졸업자에 한함)	
	군인, 경찰, 소병	방, 교정 공무원의 자녀	재직증명서	
	산업재해근로자	,	관련 사실(보상) 확인서	
	환경미화원, 우	편집배원 자녀	재직증명서	
	무형문화재 보유		무형문화재 인증서	
	입양 가정 가족		입양사실확인서	
			추가 서류 없음	
	다자녀가정(생존 자녀 3인 이상) 자녀		추가 서류 없음	

[※] 제출 서류는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학교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학 교 장 추 천 서

학교장추천서	
대장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출신학교) 중학교) 년 2월 (졸업/졸	:업예정)

추천분야	가정형편 곤란	
	마이스터 성장 잠재력	
	가업승계 예정	
	군 특성화 전형	
추천사유		

2024년 10월 일

추천자 : (

) 중학교장 (직인)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 중학교에서는 생계가 지극히 곤란하여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장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여 학교장 추천서를 본교에 제출해야 함
- 학교장추천번호란에는 학교장추천서 발급대장의 번호를 기재 함
- 추천분야란에는 해당 사유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추천사유가 있을 때에만 추천사유에 기재함.

신체검사서

구분	신장	체중	ВМІ	시력(나안,교정)		청력	혈압	기타
				좌	우	, O T	26	71-1
기준	159~ 195cm	42~ 120kg 미만	17~ 33미만	교정 0.7이상	교정 0.7이상	1,000Hz, 30dB	139/89 ~100/70	자해, 문신으로 인한 반흔자 제외
DATA	(예시) 163	60	22.6	1.0	1.0	정상	120/80	없음

- ▶ 신체검사서 작성은 중학교 건강기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혈압은 중학교 보건선생님이 측정하여 기록하여 주시고, <u>청력은 측정기 미보유시</u> 병원에서 측정 후 기록할 수 있음.)
- ▶ BMI 계산법: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 (예; 키가 163cm이고, 몸무게 60kg인 사람의 체질량지수는 60÷(1.63×1.63)=22.6 임)
- ▶ 위의 신체검사표는 군특성화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신체검사로 인하여 불합격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검사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24년 10월 일

지 원 자: ()중학교 3학년 ()반

성명: (인)

작 성 자: 담임교사 () (인)

대구일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2025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 부 모 확 인 서

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생					
	부				부					
	卫				모					
주 소										
학생 출신학교		(,) 중학교 ()년 2월	(졸업/졸업예정)			
지원 유형	기회균등전	형 유형()								
	사회다양성	전형 유형(), 소득분위 ()분위								
본인은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적합하게 지원하였음을 서약하며, 지원 자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증명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확인자 학 생 : (서명) 학부모 : (서명)										
() <u>-</u>	고등	학교장	귀하						

※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적용한 소득분위를 반드시 기재